

1

지방세제 지원

문의

행정안전부	지방세정책과	(☎ 044-205-3817)
충청북도	세정담당관	(☎ 043-220-2754)

❖ **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·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.**

● 지원대상

- (개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직·간접 피해자

● 지원내용

- (기한연장)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방소득세 등 “신고납부 세목”
 -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연장기한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
→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(필요시 최대 1년) 내 연장
- (징수유예)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등 “부과 세목”
 -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
→ 지방세 고지 및 징수 6개월(필요시 최대 1년) 내 유예
- (체납처분유예)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
 - 체납자는 신청서 제출 → 체납처분 1년 내 유예
- (세무조사 연기)
 - 신청인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
→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

● 신청접수

- (신청방법) 시군 세정(재무)부서 및 납세자보호관, 방문·팩스·우편접수
- (구비서류) 기한연장 등 신청서,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